

보도 일시	배포 시	배포 일시	2022. 4. 27.(수)	
담당 부서 <총괄>	자본시장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수영 (02-2100-2650)
	자본시장과	담당자	사무관	장원석 (02-2100-2654)

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.

□ 4.27일, 금융위원회(이하 금융위)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「코넥스시장 업무·공시·상장 규정·코스닥시장 상장 규정」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.

○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「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(‘22.1월)」의 후속조치입니다.

□ 이번 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,

①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규제(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)와 소액투자 전용계좌(3천만원 한도) 제도가 폐지되어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.

-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,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

② 또한,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(移轉) 상장할 수 있도록

-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*하고, 재무 요건(예: 매출액, 영업이익 등)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 하였습니다

* (신속이전 트랙4) 매출액 200억원 & 영업이익 10억원 & 매출 증가율 20%
→ 매출액 200억원 & 영업이익 10억원 & 매출 증가율 10%

< 신규 이전상장 요건 주요내용 >

구 분	시가총액	지분분산	일평균 거래대금	질적심사
신규 트랙 1	1,500억원 이상	20% 이상	10억원 이상	일부 면제*
신규 트랙 2	750억원 이상		1억원 이상	실시

* 기업 계속성 심사 면제, 경영 안정성·투명성 심사는 그대로 적용

③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

- 상장 후 계속되었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(年 4~5천만원 내외)을 경감하고
-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*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%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.

* 유가 코스닥과 달리 코넥스는 상장시 지분분산 의무가 없어 거래 가능 유동성이 부족한 측면

□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,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금년 5.2일 시행되며,

- 기본예탁금·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5.30일부터 시행됩니다.

□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번 「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」의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특히 창업·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
 -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·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.

< 주요 용어 설명 >

- **기본예탁금** :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일정 금액(현행 3천만원) 이상을 예탁
- **소액투자 전용계좌** : 납입한도(年 3천만원)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계좌(현재 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)
- **신속 이전상장제도** :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
- **지정자문인** :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,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, 법률자문, 공시·신고업무 대리,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

담당 부서 <총괄>	자본시장정책관	책임자	과 장 이수영 (02-2100-2650)
	자본시장과	담당자	사무관 장원석 (02-2100-2654)
담당 부서 <공동>	한국거래소	책임자	부 장 이승한 (02-3774-8610)
	코넥스시장부	담당자	팀 장 조진우 (02-3774-8611)
	한국거래소	책임자	부 장 이충연 (02-3774-9700)
	코스닥상장부	담당자	팀 장 이찬호 (02-3774-9710)



- [참고1] 코넥스 시장 개요
- [참고2] 코스피 · 코스닥 · 코넥스 시장 비교
- [참고3]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요

- ◆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 제고와 벤처투자 회수 활성화를 통한 재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개설('13.7월)
-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서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되 지정자문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장

1] **(완화된 규제)**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서 비상장시장과 상장시장의 중간영역인 특성을 감안하여 진입·공시 등의 규제 수준 등이 코스피·코스닥 시장에 비해 일부 완화

- **(진입)** 외형요건(채무, 분산 등) 없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로 상장 가능(거래소 심사 최소화)
- **(공시 등)** 정기공시항목 중 분·반기보고서와 경미한 수시공시항목 일부*가 면제되고 회계기준도 완화된 K-GAAP 선택 가능

*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공시,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공시, 공정공시 등 코스닥 상장사(52개 항목) 대비 16개 항목이 면제되어 총 36개 항목 공시

2] **(시장참가 제한)**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 충족(3천만원 이상 예탁) 또는 소액투자 전용계좌(3천만원 한도) 이용 투자자로 제한

3] **(지정자문인)** 지정자문인이 투자자 보호에 핵심적 역할 수행

- **(상장심사)** 상장적격성을 판단하고 상장 적격성 보고서 작성
- **(공시 보완)** 분·반기보고서를 대신하여 기업현황 보고서(반기)를 발간하고 기업 IR(1·3사분기) 지원업무와 공시 대리업무 수행
- **(유동성 공급)**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종목은 지정자문인이 매수·매도 호가를 제출하여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

1. 시장 현황

□ 거래소 시장은 기업규모·특성 등에 따라 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 시장으로 구분

< 주요 현황 비교 >

	코스피	코스닥	코넥스
설립	1956년	1996년	2013년
상장기업수	820사	1,543사	129사
시가총액	2,163조	414조	4.9조
일평균 거래대금	15.4조	11.9조	74.1억

주) 상장기업수·시가총액은 '22.3월말, 일평균 거래대금은 '21년 기준

2. 제도 현황

□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코스닥 이전 상장을 지원하는 시장으로서 타 시장과 차별화된 제도를 적용

< 주요 제도 비교 >

		코스피	코스닥	코넥스
상장	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무요건 高 분산의무 有 유니콘 특례상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무요건 低 분산의무 有 기술 특례상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무요건 無 분산의무 無 (다만 지정자문인이 상장적격성 심사)
	퇴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사의견 비적정,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재무요건(매출액·자기자본 등) 미달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좌 동) 재무요건 無
공시	정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보고서 제출 분·반기보고서 제출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좌 동) 분·반기보고서 면제 (다만 기업현황 보고서 발간(반기) 및 기업IR 개최(1·3사분기))
	수시	53개 항목	52개 항목	36개 항목
매매	가격제한	±30%		±15%

1. 제도 의의

- 신속 이전상장 제도는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코넥스 기업 전용 상장 요건
 - 이전상장 심사시 질적심사중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+ 상장심사 기간 45 → 30일 단축
 - 질적심사를 일부 면제하는 대신 직상장 대비 높은 재무 요건 적용

< 트랙별 상장 요건 >

유형	상장 요건
트랙1(시장성)	영업이익 有 & 매출액 100억원 & 코스닥 기준시총 300억원
트랙2(수익성)	계속사업이익 20억원 & ROE 10%(최근 및 직전사업연도)
트랙3(수익성)	계속사업이익 20억원 & ROE 20%
트랙4(성장성)	매출액증가율 20% & 매출액 200억원 & 영업이익 10억원
트랙5(이익미실현)	소액주주 10% & 코넥스 시총 2천억원 & 코스닥 기준시총 3천억원

※ 공통요건 : 코넥스 상장 1년, 선임기간 6개월 이상 지정자문인 추천, 기업경영 건전성 등

⇒ 각 트랙별 재무 요건이 높아 코넥스 기업의 신속 이전상장 제도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

2. 개선방안

① (기존요건 정비)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 완화*

* (신속이전 트랙4) 영업이익 10억원 & 영업이익 10억원 & 매출 증가율 20% → 영업이익 10억원 & 영업이익 10억원 & 매출 증가율 10%

② (신규 트랙 추가)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트랙 신설

